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협력사 행동규범

2024. 8.



서 문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하 ‘대한통운’)은 건설, 부동산, 환경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비주거 건축분야를 선도하는 탑티어(Top Tier)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기업윤리 및 투명성을 강조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보다 강화하여 고품질 건축 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며,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대한통운은 협력사를 중요한 사업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한통운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본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경영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규범과 현지 법규가 상충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한통운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 개시 전 대한통운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 중 과정에서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협력사의 모든 거래상대방에게도 본 규범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대한통운 또는 대한통운이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해 협력사를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규범에 대한 협력사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시정·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한통운과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지)될 수 있습니다.

1. 윤리경영

협력사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장 운영 및 사업의 영위에 있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국내 및 해외 현지의 제반 법률과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정직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정직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상 이익이나 부당한 혜택을 얻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한 행위(뇌물 수수, 횡령, 부패, 직권 남용 등)는 금지합니다. 정직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염려가 있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경쟁사의 가격, 제품, 판매 조건, 수익 또는 마진, 시장 점유율, 유통 방식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담합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정보 공개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지배구조/재무상태 등 경영활동 전반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③ 공정거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제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경쟁사의 가격, 제품, 판매 조건, 수익 또는 마진, 시장 점유율, 유통 방식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담합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 협정이나 협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취득하고 처리해야 하며,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보관, 이용, 제공 등)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⑥ 신원보호

협력사는 위반 사항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원 보호(익명성 보장 등)를 보장하고, 불이익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⑦ 글로벌 규제 및 제재 법령 준수

협력사는 자신의 사업 운영 및 사업적 거래행위가 미치는 향이 국내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자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시행하는 수출입 통제, 거래 등 무역제한, 통상 금지와 관련된 법적·경제적 제재를 포함하여 제반 관계 법령 및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CJ대한통운이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인권경영

협력사는 국내외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① 자발적근로

협력사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단 법규에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노동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법규 및 규정에서 허용한 정규 및 잔업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아동·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사는 위탁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작업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각국의 정의 및 연령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이 가능한 나이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되는 모든 현지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⑤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육체적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⑥ 차별금지

협력사는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판단 근거를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불법적인 차별이 아닌 근로자의 능력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3. 안전경영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와 협력하여 안전제일 문화를 정착하고 잠재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① 산업안전

협력사는 업무 절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떨어짐, 끼임 사고 및 직업성 질병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제거 내지 감소 대책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은 적절한 사업장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제어, 예방 정비, 안전 작업 절차,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예상하며 최소한의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 보호구를 작업환경에 맞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근무를 줄이거나 제외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한 후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 비상 사태 및 사고 대비

협력사는 회사의 지속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상황 및 급박한 위험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과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③ 산업 재해 및 직업성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성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및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자유로운 보고를 장려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사고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 활동을 취하고, 근로자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작업장 안전

협력사는 작업 장소 및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작업장 정리 및 정돈 등 불안정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⑤ 기계 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사는 작업에 활용되는 설비의 안전상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설비 위험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예방 정비를 통해 설비의 정상상태를 유지하여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⑥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의 중요성 및 특정 작업에 관한 지식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및 관리감독자 교육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육하고,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언제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⑦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CJ대한통운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CJ대한통운은 안전보건 관계 법에서 명시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4. 환경보호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운영(운영, 소싱, 제조, 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환경 법규 준수 및 인허가 관리

협력사는 위험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폐기물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수 환경 인허가 사항(예: 배출/방지사설 설치/운영/변경 신고)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저감하고 자원 및 물(상수, 우수 등)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③ 유해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구매로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폐기물 및 폐수 관리

협력사는 관련 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산업 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처리 공정의 처리 효율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⑤ 대기오염관리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이나 연무제, 부식제, 미립분말, 오존 파괴 물질, 공정 중 발생한 연소 부산물은 관련 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해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⑥ 제품 함유 물질 규제 및 표기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한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⑦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